

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

▶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?

-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80만원 및 간접노무비 8만원)를 지원
-채용예정인 기업에 지원

지원대상

기업

- (규모) 원칙적으로 5인 이상* 중소·중견기업**

* 5인 이상 판단 기준 :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
** (중소)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, (중견)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

-예외적으로 일부 업종·기업*은 1~4인도 참여 가능

*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(대표자 청년, 창업 7년 이내)

- (청년채용) `20.12월말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

○ (인위적 감원 제한)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
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

*고용조정이직 :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-①~⑥ 및 26-③인 것(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)

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(예시) : 07월21일(직전1개월) - 계획서 제출(08월20일) - 실제채용일

※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,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

- (참여제한)

▲정부·공공기관(공운법상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)

▲학교

▲소비향락업·유흥·주점업

▲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

▲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

▲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▲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

○구체적인 참여자격, 참여제한 요건 등은 「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공지사항 참고)

청년

 상세안내 **전화** 070-4651-3704 으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

- (연령)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
*단,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- (미취업 상태)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,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
- (참여제한)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,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
*단,
▲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 한 자는 가능
- (중복제한)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·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,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*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*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은 가능

지원요건

- (근로시간)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
-  *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
- (임금)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
*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,310원('20년 최저임금 8,590원x209시간)
- (4대보험) 4대보험 가입 필수
- (근로기간)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* 정규직 전환 후에는 **청년내일채움공제(청년 2년 1,600만원지급), 청년추가고용장려금(기업에 920만원씩 3년간 지급)** 등으로 **연계 참여 가능**(요건 충족 시)

지원내용

- (대상) 채용계획 내에서 '20.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(6만명 목표)
-  '20.12월 채용자의 경우 '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
- (지원금액)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(최대 80만원)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
- (지원한도)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20%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(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)
*예)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,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4명이며, 최초 근로자 수가 20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

-사업확대 등 필요시 40%까지 확대(최대 30명 상한)

주당근로시간	지원 인건비	간접노무비	지원금액 합계	지원기간
30시간 이상	80만원	8만원	88만원	6개월 (최고)
20시간 이상	60만원	6만원	66만원	
15시간 이상	40만원	4만원	44만원	

○ (지원금 중복지원 제한)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(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)

지원 절차(청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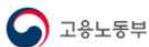
이력서 스펙으로 활용하여 취업지원 할 경우에 유용!

▶ step1 상세안내 전화 070-4651-3704 으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

지원 절차(기업)

step2 참여신청 바로가기 링크

▶ step1 <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> 링크 후 “**조인스잡**” 검색
상세안내 전화 070-4651-3704 으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



조인스잡 님 | 로그아웃

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

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)를 지원합니다.

사업소개 바로가기 >

운영기관조회 바로가기 >

참여신청 바로가기 >

채용자 명단통보 바로가기 >

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

청년을 단기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(인건비의 10%))를 지원합니다.

사업소개 바로가기 >

운영기관조회 바로가기 >

참여신청 바로가기 >

채용자 명단통보 바로가기 >

step3 참여신청 관리 → 사업신청 선택

사업참여관리(일경험)

기업정보 기업 정보 수정

기업명	조인스잡
지사명	본사
대표자	최창규
소재지	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1 , 경성빌딩 603호 604호 (서정동)

참여신청관리 | 채용가명단관리 | 지원금지금조회

•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처리상태 및 협약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참여신청 현황

등록된 참여신청서가 없습니다.

사업참여 신청



step4 운영기관 선택(탭에서 "조인스잡" 입력)

담당 운영기관 선택

담당 운영기관*	주식회사_조인스잡	운영기관찾기
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



step5 채용계획 → 운영계획_첨부서류 → 참여자격 등록(전산시스템 활용)

step6 (협약체결)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(유선안내) → 운영기관-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(유선안내)

step7 (채용 및 명단통보)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

*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

▶ 지원금 신청

- (지원금 신청)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
 - * 지원금 신청 기한 : 청년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*까지 지원금 신청
 - *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,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(예. '20.12.20. 채용 시, '21.8.31.까지 지원금 신청)
(제출자료) 근로계약서(최초 1회),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
- (지원금 지급)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

 **신청방법**

- (기업) 워크넷-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온라인 참여신청(**기관선택 "조인스잡"선택**)
- (청년) (주)조인스잡 취업지원팀 070-4651-3704 으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

 **문의처**

(주)조인스잡 취업지원팀 070-4651-3704 으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